

#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9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도시철도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서울교통공사의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자 예정액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자본금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현행 21조5,000억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함(안 제4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0. 7. 16.~8. 5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21조5,000억 원”을 “25조 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자본금) ① 공사의 수권자            본금은 <u>21조5,000억 원</u>으로 하            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            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           출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자본금) ① -----            ----- <u>25조 원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4. 작성자

도시철도과 서혜지(2133-4341)